



대체농지조성비 면제범위 질의 회신 초과면적에만 50% 부과

본회는 지난 7월29일 농지전용시 대체농지 조성비 면제범위에 대한 일선 행정기관의 견해차로 회원과의 시비가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림수산부에 다음 사항을 건의, 지난 8월23일자로 회신을 받았다.

○ 질의 내용

가. 양축시설을 하고자 할 때 $3,300m^2$ 까지는 신고에 의거 농지전용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나 만약 신고 면적이 초과되는 경우 우선 $3,300m^2$ 까지 신고로 처리하고 잔여초과면적에 대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용코자 하는 전면적(신고면적+초과면적)을 한번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나. 농지전용신고면적이 초과되어 신고면적($3,300m^2$)을 우선 신고로 처리하고 잔여초과면적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든가 신고를 생략하고 전용코자하는 전면적(신고면적+초과면적)을 한번에 허가 $6,300m^2$, 절대농지 $4,800m^2$ 까지는 대체농지조성비

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초과되는 면적(상대농지 $6,300m^2$, 절대농지 $4,800m^2$)에 대해서만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과 적용방식을 구체적으로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 양축농가가 양축시설을 위하여 $10,000m^2$ 를 전용허가 받았을 때(상대농지의 경우)

-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적 : $6,300m^2$

- 신고에 따른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적 : $3,300m^2$

- 허가에 따른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적 : $3,000m^2$

-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할 면적 및 금액

- 면적 : $3,700m^2$

- 금액 : $3,700m^2 \times \text{조성비 고시금액} \times 50/100$

○ 회신 내용

농가가 농지전용 신고범위($3,300m^2$)를 초과하는 면적을 축사로 전용코자 할 경우, 농지전용 신고범위 이내의 면적은 농지전용 신고로서 가능하며, 신고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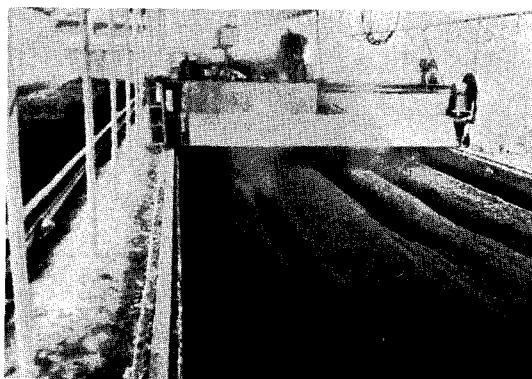
이 경우 농지조성비는 신고면적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되며 허가면적에 대해서는 절대농지 $1,500m^2$ 이내, 상대농지 $3,000m^2$ 이내는 전액 면제되며 동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면적에 대해 50%가 부과된다.

단, 비농가의 경우는 전체 면적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며, 농지조성비도 전액 부과되므로 농지 해당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문의하면 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본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입법예고된 동법시행규칙안에 대한 본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지난 8월5일 환경처 및 농림수산부에 각각 제출하였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37조 및 제38내지 제41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면제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규칙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대상 시설	사유	적용
고상식 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란양계 및 종계업자는 고상식계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바 고상식계사란 2층 계사로써 2층에서 닭을 사육하고 계분은 자동적으로 1층으로 떨어지게 하는, 즉 동일장소(계사내)에서 계분을 발효건조시켜 산란이 종료된 후 산란계를 도태한 후에야 일시에 계분을 제거(닭을 입식한 후 약 20개월간 계분을 제거치 않음)하는 계사로서 계사와 축산폐수 정화시설(계분발효건조시설)을 겸비한 계사인 바 이는 인력의 절감과 	

토지의 이용율을 높임은 물론 환경오염방지차원에서 적극 권장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러한 고상식계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축산폐수정화시설(계분발효 건조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음.

- 본사항은 양계협 제207('89. 11. 7)로 건의한 바에 의거 환경청 생활 31, 824-11, 810('89. 11. 16)으로 조치된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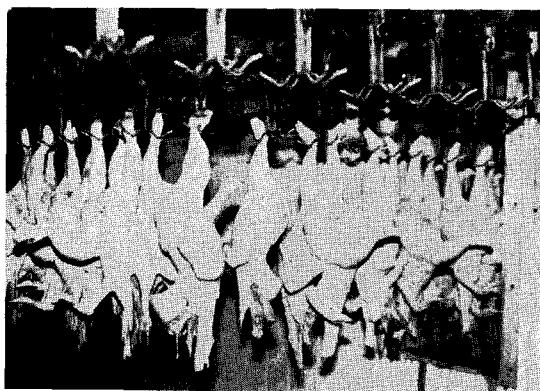
(건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 별첨)

평사에 의한 육계, 종계, 채란계 사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계사육시설 1년에 3~4회전 정도 육계사육을 하는 바 1회전당 사육기간이 5~7주로서 병아리를 입추할 때부터 계사바닥에 깔짚을 깔고 사육하며 사육도중 깔짚이 지저분해지면 깔짚을 보충해 가면서 청결히 사육을 한후 1회전 사육이 종료되면 육계를 출하후 일시에 계분을 제거와 동시에 과수원 등에 퇴비로 이용하므로 육계농장에 적재보관을 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며 시기적으로 처분이 곤란하여 야적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채란양계 케이지사에서 나오는 계분과 같이 발효건조 시설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할 수도 없는 처지이니 불가피할 경우 눈, 비만 맞치지 않고 오물만 흘러내리지 않도록 적재 보관만 할 수 있는 퇴비사(시행규칙안 제54조 규정 적용)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종계·채란 사육시설 사육 및 계분처리 방법이 앞의 육계와 같으며 사육 기간이 병아리 입추일로부터 20개월 정도로서 닭의 사육기간이 종료되어 닭을 완전히 처분한 후에 처리 장
--	---

소(과수원 등에 비료원료로 공급처)가 마련될 때까지 계사내에서 보관한 후 일시에 제거하며 계분도 왕겨, 톱밥, 깔짚 등과 혼합되어 건조된 상태에서 제거하는 관계로 별도의 축산 폐수정화시설을 할 필요가 없음.

시행규칙안 제41조 별표 5의 설치기준 제3호의 규정은 법 제2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가 설치하는 시설(양계업의 축산폐수정화시설)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 생각되오니 면제 규정을 단서로 삽입하여 주시기 바람.

노계처리 전문도계장 설치 건의에 대한 회신 금년부터 추진계획 밝혀



본회가 지난 7월13일 정부에 제출(관련내용 본지 8월호 게재)했던 노계처리 전문도계장 설치 건의에 대해 농림수산부가 검토한 바 긍정적인 회신내용을 보내왔다.

그간 노계처리는 전용 육계도계장에서 육계도계 후 야간에 처리하여 계란가격 하락시나 육계수요 기에 노계도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계란의 생산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임을 회신에서 밝혀와 채란업계의 생산조절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 부가세 과세 위험심판 청구 본회 및 12개 축산관련단체 합동으로

본회를 비롯한 12개 축산관련단체가 합동으로 사료 및 동물약품, 축산기자재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 「부작위 입법으로 인한 평등권 및 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을 임영득, 한수복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위헌청구를 하였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사료, 동물약품,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헌임을 밝혔다.

이번 13개 축산관련단체장이 공동으로 작성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내용을 보면 13개 단체의 청구인 등은 각 축산농민들이 조직한 단체이거나 축산용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조직한 단체로서 모두 축산연관 단체이다.

헌법 제123조에서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약, 농업용기계 및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구 등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분명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료, 농약, 농업용기계 등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와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면 같은 농업용(축산업) 기자재인 사료, 동물약품, 축산용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당연히 비과세 조치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3조 내지 54조에 정부는 농어촌의 발전과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

기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위 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에 의하여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는 부가 가치세액 전액을 매회계년도 세출예산에 추가로 계상, 위의 농어촌발전기금에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다.

이는 축산농민들이 숙원하던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조치를 외면하고 과세된 재원을 농어촌발전기금에 지원 사용한다는 규정은 징수에 따른 비용과 노력을 지불하는 한편, 과세 징수하였다가 그 재원을 고스란히 축산농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것은 처음부터 과세·징수하지 않는 쪽이 정책효과 면에서 선 일단 징수하였다가 다시 그 분야에 지원하는 쪽 보다 효과적이다.

특히 헌법위반 사유에서 헌법 제1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과 정신에 따라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선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하는 조치를 취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계속 과세하고 있는 것은 축산농민에게 만 부당하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그것 자체가 헌법위반인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축산농민에게 공급되는 기자재에 대하여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되어 이 또한 헌법위반의 사유가 되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정부는 축산농민에게 공급하는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비과세도록 조치하여 하루 빨리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의 헌법위반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은 △한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전동용 △대한양계협회장 신홍종 △대한양돈협회장 전동용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윤우 △한국종축개량협회장 설동섭 △한국사료협회장 김주호 △한국단미사료협회장 박석남 △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윤병성 △한국육가공협회장 박재복 △한국유가공협회장 전웅진 △한국대용유사료협회장 정환구 △한국양봉협회장 조기태 △대한수의사회장 정창국 등이다.

우수 양계인 선발 공모 박람회 양계인대회시 사례발표

'91한국양계박람회 추진위원회(위원장 오봉국)는 전국의 채란인·육계인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경영과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우수 양계인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박람회 개최시 전국양계인들에게 사례를 발표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우수양계인 선발을 공모한다.

선발요령은 채란·육계생산자 별로 기록된 사양일지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하는데 유관업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본회 도지부(분회)장, 사료, 약품, 종계회사의 추천을 받아 신청을 받으며 선발시 추천사도 함께 발표된다.

신청마감은 9월13일까지이며 시상은 △우수양계인 2명(상장, 각 100만원 상당 부상), 장려상 4명(상장, 각 50만원 상당 부상)을 하게 된다.

닭고기·계란 소비홍보 포스터 현상공모 양계박람회 개최시 전시키기 위해

본회는 오는 10월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91한국양계박람회 기간중 전시하게 될 제4회 닭고기·계란 소비홍보 포스터를 공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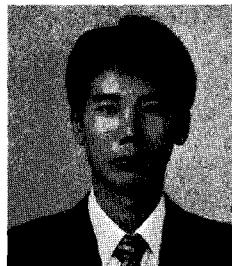
현대인을 위한 필수 식품으로 영양이 풍부하면서도 다이어트 식품으로 가장 우수한 닭고기 및 자연이 인간에게 준 완전식품인 계란을 홍보하기 위해 공모하는 포스터에는 △최우수상 1점(상장 및 2백만원 상당 부상) △우수상 1점(상장 및 50만원 상당 부상) △특선 3점(상장 및 20만원 상당 부상)

△입선 20점(상장 및 기념품)을 시상하게 된다.
접수는 본회 양계박람회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며 접수일은 9월26일부터 27일 오후6시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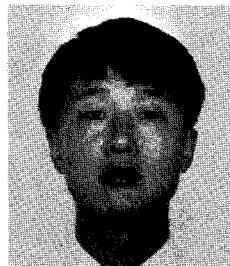
신입 직원 채용

본회는 양계박람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편집부 권동원씨가 의원 면직됨에 따라 신입직원을 채용하였다.

- 이인수(영남대 축산학과 졸)
- 이창훈(충남대 축산학과 졸업 예정)



△이인수



△이창훈

「**월간 양계지**」는 본회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며 각종 정보를 전달하여 양계의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해 발행되고 있습니다.

• • • • •

위생적이고 안전한
양계산물 생산을 위해
양계인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